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기관 우선 이전 지역에 인구감소지역 추가 》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09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Ⅰ.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제2201809호) ····· 1

1. 제안경위 ·····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3. 참고사항 ····· 2

4. 회부 경과 ····· 2

5. 검토의견 ····· 4

가. 공공기관 우선 이전 지역에 인구감소지역 추가(안 제25조) ···· 4

Ⅰ.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제2201809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상웅의원 등 25인

나. 발 의 일 : 2024. 7. 16.

다. 회 부 일 : 2026. 3.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소멸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관한 시책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활성화 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회부 경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공동 소관 부처로는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가 지정된바, 2024년 7월 16일 발의된 동 개정안은 같은 해 7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해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부가 이루어졌음.

이후 제25차 지방시대위원회(2026. 2. 2.)에서 공동 소관 부처에 국토교통부를 추가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되고, 정부로부터 국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소관 부처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이 제기된바, 국토교통부 소관에 해당하는 동 개정안이 2026년 3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로 회송됨.

대표발의	제출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회송일)
		회부일	전체회의 상정 (소위원회 회부)	소위원회 상정	
박상웅의원	2024. 7. 16.	2024. 7. 17.	2024. 9. 26.	-	2026. 3. 6.

5. 검토의견

가. 공공기관 우선 이전 지역에 인구감소지역 추가(안 제25조)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인구감소지역·혁신도시 활성화) ① ----------인구감소지역·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인구감소지역·혁신도시----------.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5조제1항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함)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혁신도시시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책 대상에 '인구감소지역'을 추가하여 혁신도시시책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인구감소지역·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혁신도시[1]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에 따라 이전공공기관[2]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로,

이 법 제26조[3]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

---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하게 되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아울러, 이 법 제25조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시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법」 제29조제1항 본문[4]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한편, 이 법 제2조제12호[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부는 2023년 12월 수립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 ‘기업 지방이전 촉진’ 등을 포함한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추진[6]해 나가고 있음.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따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 이주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존의 혁신도시 지역은 지역발전거점 조성이라는 지정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공공기관 이전 원칙에 관하여 지역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7]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

6) 2023. 12. 18.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

7)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성명(기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배치 촉구, 2023.1월, 7월)
↔ 비혁신·인구감소도시 공동성명(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촉구, 2023. 3월, 5월, 11월)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법」에 우선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제2201808호)[8]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또는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그 심사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공공기관 이전 원칙 변경과 관련된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 발의	주요내용	의안번호 (발의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기존 혁신도시 인근지역 등으로 이전 허용 특례	제2200143호 ('24.6.5.)	행정안전 위원회

8) 현행 「혁신도시법」의 조문 체계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취하나,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 내에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시킨다는 점에서 주된 차이가 있음.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제220180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전도시"라 함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10. "인구감소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이전공공기관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률안	대표 발의	주요내용	의안번호 (발의일)	소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인구감소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로 이전 우선 고려	제2200145호 ('24.6.5.)	국토교통 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인구감소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로 이전 우선 고려	제2200152호 ('24.6.5.)	국토교통 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	혁신도시 이전 원칙 →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비수도권) 이전	제2201379호 ('24.7.4.)	국토교통 위원회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박상웅 의원	혁신도시 이전 원칙 → 인구감소지역 이전 원칙 우선	제2201808호 ('24.7.16.)	국토교통 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의원	혁신도시 이전 원칙 → 인구감소지역 이전도 가능	제2201809호 ('24.7.16.)	국토교통 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 간 균형 강화	제2204084호 ('24.9.19.)	국토교통 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의원	혁신도시 이전 원칙 → 인구감소지역 이전도 가능	제2213881호 ('25.11.4.)	국토교통 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의원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제2213882호 ('25.11.4.)	국토교통 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의원	개별이전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제2217045호 ('26.2.25.)	국토교통 위원회

참고로, 현행법 제25조제2항은 정부로 하여금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 같은 항 각 호[9]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그 중 같은 항 제3호는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이 입법화되어 혁신도시시책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인구감소지역·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변경되는 경우, 현행법 제25조제2항제3호의 “혁신도시 활성화”도 “인구감소지역·혁신도시 활성화”로 수정하는 것이 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의 부칙은 시행일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25조제1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인구감소지역·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를 인용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0]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1]의 규정도 개정될 필요가 있음.

---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각 호 생략)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각 지방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으로, 이전효과 등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전효과를 감안하고 공론화 등을 거쳐 이전 원칙 등을 결정할 예정임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78

참고 1 혁신도시 지정 현황

지역	위치	면적 (km^2)	인구(천명)		이전완료 공공기관 (개)	사업비 (억원)
			계획	현황 ('25.12월)		
부산	영도구, 해운대구, 남구	0.935	7	7.2	13	4,127
대구	동구	4.216	22	16.7	10	14,501
광주・전남	나주시	7.361	50	39.5	16	14,175
울산	중구	2.991	20	19.4	9	10,390
강원	원주시	3.585	31	29.4	11	8,396
충북	진천군, 음성군	6.899	39	31.8	11	9,969
전북	전주시, 완주군	9.852	29	29.0	12	15,229
경북	김천시	3.812	27	23.4	11	8,676
경남	진주시	4.093	38	33.7	11	10,577
제주	서귀포시	1.135	5	4.4	6	2,939

* 대전,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20.10월)은 완료됐으나, 구체적인 입지, 면적 등이 정해지는 후속 절차(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실시계획 수립 등)는 이뤄지기 전임.

참고 2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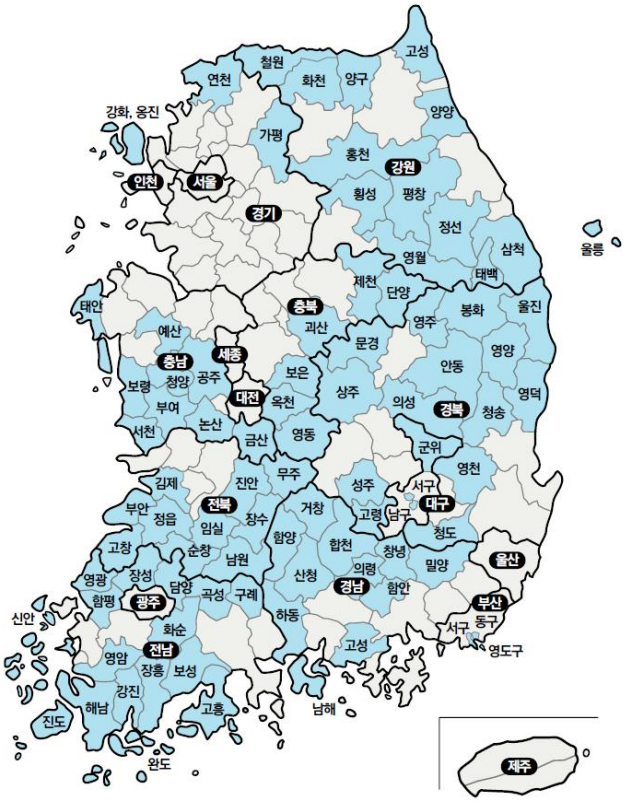

주: 군위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당시('21.10.19.)에는 경상북도에 속했으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23.7.1)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편입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 3 인구감소지역 주요 지원제도 현황

□ 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

근거법령・규정		지원 내용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보육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 기부채납・무상임대 방식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교육	· 유・초・중・고등학교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통합운영 및 필요비용 지원 · 학교 설립기준 및 인가에 대한 특례 부여 · 교육시설 설치 및 해당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의료	· 거주지 방문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 수행 및 행・재정적 지원 · 필수의료 제공 가능 의료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 · 의료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우선지원
	주거 교통	·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노후주택 개선 비용의 일부 지원 · 섬 주민, 섬 주민 차량에 대해 운임・요금 지원
	문화	·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 ·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촉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
	기타	·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의 요건 완화 · 노후・유휴시설 관리실태의 주기적 점검 및 활용범위 확대 · 산업단지 활력 증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등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 입주 사업자에 대한 승인・허가 신청 사무 지원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 가능
농촌공간재구조화법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우선 지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수도권 일부 인구감소지역에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 기준재정수요액(보통교부세 산정 관련) 보정
지방세특례제한법		·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이전 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취업, 체류자격 완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행안부고시)		·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의 95% 배분

자료: 행정안전부